

사단법인 전력전자학회 정 관

[1996년	6월	15일	제	정]
[1998년	7월	23일	일부개정]	
[2003년	12월	17일	일부개정]	
[2008년	8월	6일	일부개정]	
[2011년	9월	9일	일부개정]	
[2017년	8월	14일	일부개정]	
[2021년	8월	19일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전력전자공학 기술 분야에 관련된 학술활동과 기술의 교류를 도모하고,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력전자분야에 대한 학술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전력전자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Institute of Power Electronics로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지, 논문지 및 도서의 발간
2. 연구개발사업 및 산학협동
3. 표준 및 규격의 제정
4.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5. 국제교류활동
6. 기술조사 및 자문활동
7. 공로표창 및 연구장려
8. 전 각호 이외의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에 규정한 바와 같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 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전력전자기술 및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
2. 학생회원 :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및 전문대학에서 전력전자공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는 자

3.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법인 또는 산업체
4. 단체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도서관과 공공기관 또는 연구소의 자료실
5. 명예회원 : 본회가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 있어서 특별한 공적이 있고 본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회원 중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정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수석부회장 1인
- ③ 부회장 5인(Editor-in-Chief 포함)
- ④ 이사 15인 이상 30인 이하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및 부회장 포함)
- ⑤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제13조 ①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자격)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평의원이어야 하며 감사는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방법)

- ①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1. 수석부회장, Editor-in-Chief을 제외한 부회장,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2. 당해년도 수석부회장은 차기년도의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3. Editor-in-Chief의 선출은 JPE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4. 비선출직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5. 투표결과 2인 이상의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 ② 임기 중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는다.

제14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평의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평의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평의회,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 또는 총회, 평의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평의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의 승인
2. 임원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7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를 소집한다.
-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총회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정회원수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총회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 ②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총회의결의 특례)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평 의 원 회

제21조(평의원회의 설치)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22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승인
2.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업계획안, 예산결산안, 정관, 규칙 변경안 및 지부설치의 동의
3. 중요업무보고 청취 및 자문

제23조(평의원 선출방법과 선출정족수)

- ① 평의원의 정족수는 100인 이상 150인 이하로 한다.
- ②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이 4분의 3을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지역 및 산학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4분의 1을 선출한다.
- ③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보선할 수 있다.
- ④ 평의원의 선출방법은 본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평의원회 소집과 의결정족수)

- ① 평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평의원으로서 구성하며 연 1회 정기 평의원회를 소집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되 임원 선출을 위한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평의원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 및 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
5.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및 연구회 설치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

- ① 회장은 연 6회 이상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②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 ②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7 장 재 산 및 회 계

제2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기부금, 찬조금 또는 보조금
-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 4. 자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 5. 기타 수입금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과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2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회계의 공개)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4월에 공개한다.

제 8 장 보 칙

제34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6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평의원회의 동의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8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다.
2. 초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초대평의원 및 이사는 회장이 위임한 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초대평의원 및 임원의 임기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제11조의 개정조항은 2005년 1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4. 제11조의 개정조항은 2009년 1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5. 제23조의 개정조항은 2012년 1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평의원부터 적용한다.
6.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35조, 제36조의 개정조항은 2017년 8월 14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7. 제33조의 신설조항과 제35조의 개정조항은 2021년 8월 1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